

2022학년도 결산감사 보고서

[감사기간: 2023. 3. 20. ~ 4. 7.]

2022. 4. 19.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목 차

■ 2022학년도 결산감사 및 인계·인수감사 보고서	1
■ 감사결과 지적 및 권고 사항	
1. 학교법인조선대학교	3
2. 조선대학교	5
3. 조선대학교병원	10
4. 조선대학교치과병원	18
5. 호남권역재활병원	21
6. 조선이공대학교	22
7.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4
8.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5
9.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6

2022학년도 결산감사 보고서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회 귀중

2023년 4월 19일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와 우리법인 정관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20일 부터 4월 7일까지 학교법인조선대학교 및 설치학교인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재산상황,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 음

1. 제 법령, 정관, 규정의 준수 여부
2. 법인 및 각 설치학교의 규정 정비 여부
3. 제 규정의 법령, 정관 및 타 규정과의 부합 여부
4. 편성된 예산의 실행가능성, 현실성 및 적정성 여부
5. 적절한 자산관리와 그 유지 여부
6. 법인과 설치학교간의 유기적 협조 여부
7. 법인 및 설치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
8. 각 기관장의 업무장악 및 효율적인 통제 여부
9.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의 유지 여부
10. 예산집행 시 법령 및 제 규정 준수 여부
11.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 전용의 적절성 여부
12. 결산은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여부
13. 각급 기관장 및 회계책임자의 변경 시에 인계·인수 적정성 여부
14. 기타 법인과 각 설치 학교 및 기관의 발전계획 검토 등

각급 기관의 회계는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 따로 붙임 지적된 사항은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서 나온 것이나 모든 취약점이나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각급기관은 따로 붙임 지적된 사항 외 개선사항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통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고, 업무수행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정호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이현필




2022학년도 결산감사 결과보고서

(2023. 4. 19.)

기관명: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 정 호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이 현 필 

연 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p>감사 기간 휴가 등 사용 자제 협조</p> <p>감사는 「정관」 및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인의 권한을 행함에 있어 감사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선대학교를 포함한 피감사기관은 피감사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p> <p>2022학년도 결산감사를 진행하면서 조선대학교 성과관리팀에서는 감사 기간 중 휴가 및 출장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성과관리팀-225, 2023.3.3.)을 전부서에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3.31.부터 진행한 3일간의 감사 기간 중 첫째 날 다수의 출장 및 휴가자로 감사를 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조선대학교 직원인사팀을 통해 휴가 및 출장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 병가, 퇴직, 출산 등을 사유로한 휴가를 제외한 연가 사용자 72명, 출장 26명을 확인하였고, 둘째 날 오후 까지 연가 사용자 34명, 출장 5명을 확인하였습니다.</p> <p>조선대학교는 요구 자료 제출 등 감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감사 기간 중 휴가 및 출장 자제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p>	<p>○ 개선 조치</p>
2	<p>감면제도 관련 복리후생비 집행 금지</p>	<p>○ 개선 조치</p>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 식사대와 피복·개인장구 등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내부 인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p> <p>조선대학교는 복리후생비를 용도에 합당하게 집행하기 바라며,</p>	
3	<p>비정년계열 교수 재임용 관련 규정 개정</p> <p>조선대학교 개정 「교원인사규정」은 강의전담교원의 경우 이학/공학계열 및 인문/사회/예·체능계열까지 모든 계열별 논문최저 편수를 완화하면서, 2023. 9. 1.자 재임용 대상부터 '비정년계열강의전담교원에게 적용하는 재임용 기준을 첫 번째 재임용에 한하여 국내학술지 3편을 국제학술지 1편으로 인정한다'로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p>	<p>○ 개선 조치</p>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p>나아가 비정년계열(강의전담교원 등)의 재임용 조건을 비정년교원 각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향후 단체교섭 등에서 비교 대상 교원과의 합리적 차별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대학에서는 강의전담교원의 경우 연구실적이 아닌 다른 업적을 요구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고민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p>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4	<p>징계 처분자에 대한 승진, 승급제한 및 호봉 재획정 점검</p> <p>※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승급의 제한은 2017. 7. 26. 개정부터 자금 유용의 경우에도 6개월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2019. 11. 5. 개정에서 음주운전을 사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대학교 규정보다 강화된 것으로, 향후 규정 개정 시 대상과 시점을 정하여 불이익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고,</p>	○ 기관 경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p style="text-align: right;">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의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